

의정활동보고서

제231회 임시회(2009. 2. 10 ~ 2. 2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첫 회기인 제23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중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 위문과 신재생 에너지 실태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경제체제 가동과 낙동강 다이옥산 저감 대책 등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멜라민 파동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아 우리 지역 경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의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먼저, 300만 도민의 숙원인 경북도청 이전지역을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경북의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의원연구단체와 의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연구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안건처리 101건, 현지 확인 40회, 49건의 진정서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노력과 도민의 협력,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길 정비, 녹색 뉴딜사업,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정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실물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 등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내용들을 면밀히 점검하시어 좋은 시책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본회의 진행과정을 전국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각, 지체 등 장애인들이 도의회 홈페이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능도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4
II. 의사일정	5
1. 소 집	5
2. 회 기	5
3. 활 동	6
III. 의안처리	11
IV. 민원처리	12
1. 청 원	12
2. 진 정	12
가. 접 수	12
나. 처 리	13
V. 본회의 보고사항	14
1. 의안 접수사항	14
2. 조례 공포사항	15
3. 의회행사	16
4. 위원회 활동사항	16
5. 기타 의정활동 사항	17
VI. 5분 자유발언	21

부 록

☐ 조례안	30
☐ 동의안	103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31회 임시회는 2009년 2월 10일 11:00 개회하여 2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10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백 천봉·권영만 의원)을 청취한 후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휴회기간인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손진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징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의결하고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9-5호(2009년 1월 30일)

라. 집회일시 : 2009년 2월 10일(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9년 2월 10일 ~ 2월 20일(11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69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특 위	
									예결	기타
230회 까지	576	32	89	83	86	76	74	85	38	13
231회	27	1	5	4	4	4	5	4		
누 계	603	33	94	87	90	80	79	89	38	13

※ 제8대 의회 누계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0(화) 11:00 (제1차)	※ 개회식 1.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2. 20(금) 11:00 (제2차)	1.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안용복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1.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20(금) 11:00 (제2차)	15.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16.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0(화) 15:40 (제1차)	☐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1(수) 11:00 (제1차)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조정실,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12(목) 11:00 (제2차)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경제과학진흥국 ○ 대구경북연구원(현지)	
2. 16 ~ 2. 18 (3일)	☐ 공무원연수기관 비교방문 ○ 현대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강원도인재개발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1(수) 11:00 (제1차)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2. 12(목) 11:00 (제2차)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관실, 노인전문간호센터, 보건복지여성국	
2. 17 ~ 2. 18 (2일)	☐ 현지확인 ○ 포항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 경주용강종합사회복지관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1(수) 11:00 (제1차)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 경상북도 안용복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12(목) 11:00 (제2차)	☐ 2009년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6 ~ 2. 17 (2일)	☐ 현지확인 ○ 영덕군청, 오십천·송천1리 가뭄 지역(영덕) ○ 영일만항 개발 현장, 오천 갈평정수장(포항)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0(화) 13:30	☐ 특 강 ○ 위기탈출을 위한 대책과 미래를 위한 도전	공병호 소 장
2. 11(수) 11:00 (제1차)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2. 17 ~ 2. 18 (2일)	☐ 현지확인 ○ 암반관정개발(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 저수지준설 현장(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 하나로영농조합법인(토마토, 문경읍) ○ 안동청과물종합처리장(풍산읍)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1(수) 11:30 (1차)	☐ 간담회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009년도 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12(목) 11:00 (제2차)	☐ 2009년도 관광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징건축물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 13(금) 11:00 (제3차)	☐ 2009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17 ~ 2. 18 (2일)	☐ 현지확인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영천) ○ 도내 기업 현장방문(2개소)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2 ~ 2. 13 (2일)	☐ 현지확인 ○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합동소방훈련 (경주 기림사) ○ 영덕 「삼사 ~ 오포」 도로간 확 · 포장공사 현장	
2. 16(월) 11:00 (제1차)	☐ 2009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17(화) 11:00 (제2차)	☐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 경상북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Ⅲ. 의안처리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7 (285)	16 (280)	10 (225)	6 (50)	0 (4)	0 (1)	0 (1)	1 (4)	
조 례 안	소 계	16 (172)	15 (168)	9 (130)	6 (34)	0 (3)	0 (1)	0 (1)	1 (3)	
	의 제 회 안	1 (42)	1 (40)	1 (33)	0 (7)				0 (2)	
	도 지 사 제 출	9 (95)	9 (94)	4 (71)	5 (20)	0 (2)	0 (1)	0 (1)		
	교 육 감 제 출	6 (35)	5 (34)	4 (26)	1 (7)	0 (1)			1 (1)	
규 칙 안		0 (4)	0 (4)	0 (3)	0 (1)					
예산·결산		0 (24)	0 (24)	0 (10)	0 (14)					
동의·승인		1 (30)	1 (29)	1 (29)					0 (1)	
건의안		0 (4)	0 (4)	0 (4)						
결의안		0 (15)	0 (15)	0 (13)	0 (1)	0 (1)				
기 타 안		0 (36)	0 (36)	0 (36)						

◆ 상임위 유보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07. 3.14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 6.12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11. 5상정유보)
- 경상북도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환경위원회-’09. 2.12심사유보)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 (69)	(4)	(7)	(5)	1 (32)	(3)	(2)	(4)	(4)	(8)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11)			(4)	(3)		(1)			(3)
행 정 보 건 복 지	(7)	(3)	(4)							
교 육 환 경	(6)					(3)		(3)		
농수산	(5)								(4)	(1)
통 상 문 화	(6)		(3)	(1)			(1)	(1)		
건 설 소 방	1 (28)				1 (27)					(1)
특 별 위 원 회	(3)				(2)					(1)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69)	1 (69)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11)	(11)				
행 정 보건복지	(7)	(7)				
교육환경	(6)	(6)				
농 수 산	(5)	(5)				
통상문화	(6)	(6)				
건설소방	1 (28)	1 (28)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15, 동의안 1)

제출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교육감 (2009. 1. 29)	경상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환경 (2009. 2. 2)
경상북도교육감 (2009. 1. 29)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9. 2. 2)
경상북도교육감 (2009. 1. 2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9. 2. 2)
경상북도교육감 (2009. 1. 29)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9. 2. 2)
경상북도교육감 (2009. 1. 29)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9. 2. 2)
경상북도교육감 (2009. 1. 29)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교육환경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징건축물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통상문화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 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건설소방 (2009. 2. 2)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소방 (2009. 2. 2)
경상북도지사 (2009. 1. 30)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건설소방 (2009. 2. 2)

2. 조례 공포사항(11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8.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1. 5 (제3066호)
2007.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1. 5 (제3067호)
2007.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 1. 5 (제3068호)
2007.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1. 5 (제3069호)
2007.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1. 5 (제3070호)
2008.12.16	경상북도 지 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2009. 1. 5 (제3071호)
2008.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1. 5 (제3072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8.12.1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1. 5 (제3073호)
2008.12.2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1.12 (제3074호)
2008.12.2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9. 1.12 (제3075호)
2008.12.2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1.12 (제3076호)

3. 의회 행사

○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9. 1. 7(수) 11:00
- 장 소 : 경상북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및 도의원 전원

4.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기획경제 위 원 회	2009. 1.15 ~ 1.17	울릉군	• 울릉군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실태 확인 -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지원실태 - 저탄소녹색성장시범지역 조성 여건 - 2009년도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역현안 의견수렴 등

5.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 일 시 : 2008. 12. 26(금) 14:30
 - 장 소 : 도 경찰청 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착공식
 - 일 시 : 2008. 12. 29(월) 11:00
 - 장 소 : 안동 영호대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야의 경복대중 타종행사
 - 일 시 : 2008. 12. 31(수) 24:00
 - 장 소 : 영덕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9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 일 시 : 2009. 1. 1(목) 06:40
 - 장 소 : 포항 호미곶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신년 충혼탑 참배
 - 일 시 : 2009. 1. 2(금) 08:00
 - 장 소 : 성주 충혼탑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매일신문사 주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9. 1. 2(금) 12:0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대구상공회의소 주관 기관장 신년 오찬회
 - 일 시 : 2009. 1. 2(금) 12:5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풍기-단산간 도로공사 기공식
 - 일 시 : 2009. 1. 2(금) 15:00
 - 장 소 : 영주 소수서원 광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9. 1. 6(화) 18:30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9. 1. 9(금) 11: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8. 1. 9(금) 11: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2009년도 경주시 청년연합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 일 시 : 2008. 1. 10(토) 18:30
 - 장 소 : 경주 대명리조트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매일신문사 주최 2009 백두·낙동 대탐사 발대식
 - 일 시 : 2009. 1. 12(월) 15:00
 - 장 소 : 안동 시민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 일 시 : 2009. 1. 15(목) 14:00
 - 장 소 : 경북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JC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취임식
 - 일 시 : 2009. 1. 15(목) 18:00
 - 장 소 : 영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이·취임식
 - 일 시 : 2009. 1. 15(목) 10:00
 - 장 소 : 농업인회관 강당
 - 참 석 :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 하반기 제3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9. 1. 15(목) 14: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 참 석 : 방유봉 의회운영위원장
-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 신년인사회
 - 일 시 : 2009. 1. 16(금) 18:00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낙동강 다이옥산 관련 환경부 차관주재 긴급대책회의
 - 일 시 : 2009. 1. 21(수) 13:00
 - 장 소 : 구미시하수처리장, (주)코오롱
 - 참 석 : 백천봉 교육환경위원장
- 경상북도새마을회 2009년 신년하례식
 - 일 시 : 2009. 1. 21(수) 14:00
 - 장 소 : 구미 경상북도새마을회관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 일 시 : 2009. 1. 29(목) 11:00
- 장 소 : 농업인회관 강당
- 참 석 :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 한국국학진흥원 이사회

- 일 시 : 2009. 1. 30(금) 11:00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회의실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 일 시 : 2008. 2. 5(목) 11:30
- 장 소 : 경주 농어민회관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동해안 발전 포럼

- 일 시 : 2008. 2. 5(목) 13:30
- 장 소 : 경주 대명리조트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도의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 일 시 : 2009. 2. 5(목) 14:3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9 경북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 일 시 : 2009. 2. 9(월) 10: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연장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VI. 5분 자유발언

□ 2009년 2월 10일(화) 제23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백천봉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백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 2월 13일 새해 첫 본회의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 인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기축년 새해 첫 본회의 임시회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함에 많은 안타까움과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의 좋은 의견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지적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고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인사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을 보면 2007년 1월, 8월 인사, 2008년, 2009년 1월 인사에 대하여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 1월 기축년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있을 간부인사는 능력위주로 전진 배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사를 보면 새경북기획단장은 2006년 9월 20일 신설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섯 명 째이고 석 달짜리 단장도 있었습니다. 3개월 5일 근무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환경해양산림국장은 무려 6명 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만약 도지사를 2년 반 만에 여섯 번이나 바꿨다면 경북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은 독도사업, 환경문제 등 산적해 있는 중요한 현안사업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이상천 의장님께서도 윤정용 전 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장

이신 이삼걸 새로 오신 행정부지사, 그리고 김관용 지사께 전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유임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교체되었습니다.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와 적재적소 배치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매 인사 때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본 의원뿐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해가 되는지 묻습니다.

아무리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2년 반 동안 중요한 환경해양산림국장을 여섯 번 바꾼다는 것은 엇장수 가위는 엇장수 마음대로 친다는 것과 별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과장, 계장 이하 공무원은 매번 업무보고를 해야 하고 송별회식, 환영회식 등 쓸데없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데 이렇고도 행정의 지속성,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께서 지난번 23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2008년도 국가기관에서 조사 평가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던 분야들을 열거하면서 그 이유는, 사회변화에 긴밀하게 부응하지 못했거나 간부공무원의 업무파악 부족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된다면 의회차원에서 경북도민을 상대로 그동안의 경북도의 인사난맥상에 대하여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20년간 방치된 도청이전지 확정, 1988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도청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선거공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도청이전지 확정, 그리고 노인복지대상 수상 등 참으로 훌륭하게 잘하신 분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도민들은 “야, 김관용 지사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겠나? 꼭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찬성하고 박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신 지사께 이런 문제점들이 확실히 개선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2월 10일(화) 제23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권영만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5분이 좀 넘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에서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 봉화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촌의 금융위기에서 출발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혼란으로 인류 생존과 발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국가발전 비전의 주요 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류문명의 큰 흐름이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 정보혁명시대에 이르렀고 다가오는 환경혁명시대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창조를 위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동력을 통한 신경제 건설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500만 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의 봉화군 유치는 다가올 환경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될 국립백두대간 봉화수목원은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생태자원 보전과 연구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이 발효된 이후 세계는 자국의 유용식물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희귀 식물종의 60%이상 현지의 보전 의무화에 따라 수목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 봉화수목원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500여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올해 68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세계적인 산림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의미와 발전 여건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본 의원과 봉화 군민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유치를 위해 애쓰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국립 봉화수목원 조성을 바탕으로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를 유치한다면 봉화를 기점으로 한 북부지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산림문화휴양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 봉화 유치를 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계산림대회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 세계총회와 함께 산림분야 양대 올림픽이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1926년 제1차 로마대회를 시작으로 6년마다 개최되며 세계식량농업기구를 중심으로 185개 회원국에서 각국 대표, 관련 세계석학, NGO, 임업관련 단체, 관광객 등 50만 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13차 대회는 금년 10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약으로 BT, ET 산업이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화 추세 속에서 백두대간, 춘양목과 철쭉군락 등 청정의 생물자원과 잘 보전된 생태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봉화지역으로서는 전 세계의 산림문화와 관련한 우수한 선진지식과 정보수용, 교환을 위한 세계적 행사인 제14차 세계산림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회의장, 숙박시설, 열악한 교통 등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여건이 충

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완료되는 수목원 시설, 이와 연계하여 조성 또는 건설되는 많은 시설과 SOC 등을 활용할 경우 세계산림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개최년도인 2015년까지 6년이란 기간이면 충분히 개최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지 세계산림대회 유치를 산림청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유치 심사절차 이행을 위하여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국가유치 결정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승인,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3차 아르헨티나 대회에서 유치의사 표명, 2011년 FAO산림위원회에 유치신청서 제출, 2012년 FAO 최종발표에 이르기까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일들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행사 유치는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적 수입, 지역브랜드의 획기적인 제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림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정립 등 세계속의 경북을 알릴 수 있는 최대의 채널입니다.

아울러 이번 세계대회 유치는 대회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많은 성과를 통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산 면적이 26만 3,000ha의 아시아 최대 식물보호구역인 백두대간과 춘양목, 철쭉군락지 등 산림자원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 마련, 문화·관광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환경의식 공유 등 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지하시어 2015년 제14회 세계산림대회가 반드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2월 20일(금) 제2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손진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영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손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고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 즉 신빈곤층이 확대되어 가는 등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가 발 벗고 나서는 이때에 우리 경북도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대대적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을 통한 고통분담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늘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복지돌이 기동팀을 가동하는 등 도 차원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 복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 단위뿐만 아니라 시군이 모두 참가하는 보다 큰 틀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각 시군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신빈곤층 발굴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도의 저소득층, 노인 등 복지 대상자가 70만 명에 이르며 전체 도민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긴 하나 복지돌이 기동팀의 전담직원이 5, 6명 정도로 구성된다는 것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와 현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점검하는데 처음부터 무리가 따르는 일로 사업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당장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사회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12월에 조사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를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

비율은 전국평균이 6%이며, 결식아동 수가 45만 3,63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우리 경북도의 결식아동 수가 3만 9,998명이고 결식아동 비율이 전체 학생수 38만 4,298명 대비 10.4%로 전국 평균 6%를 상회하며, 전북의 11.2%에 이어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수준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우리 도의 봉화군은 결식아동 비율이 무려 37.7%에 이릅니다. 전체 2,948명의 학생 중 1,110명의 학생이 결식아동입니다. 그 다음으로 군위군이 29.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결식아동 비율 전국 1, 2위를 경북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도 차원에서의 결식아동 지원대책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학생들로서는 마음의 상처가 뺏속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우리 도에 가장 많다는 현실이, 또한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본 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통해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물론 도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5건

☐ 동의안 : 1건

□ 조례안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관할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와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서류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와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제4조(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예정지구의 명칭과 사업시행자
2.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
3.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4.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5. 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6.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 등의 세목

제5조(행위 허가 제외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등록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등록업자와 서면으로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지 또는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 대행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대행하는 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
3.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제7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 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관 등의 수용 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
4. 도시정보화계획
5. 문화재보호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7. 도시방재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9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개발예정지구 주민(세대주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부터 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11호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규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임대보증금·최저 생계비 등 주거와 생활대책의 지원
4.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는 직업전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대상·방법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연분묘 이장
2. 잔존건축물 처리
3.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4.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5.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과 방역용역
6. 그 밖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세자금과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대상·규모·내용·방법 등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주하는 공공기관 및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개발예정지구 주민(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주민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
-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신·구 지적대조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성토지와 원형지 공급) 법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절차와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등

제1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 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시기와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제16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15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 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제20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1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3조(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 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건설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제4항제1호에 의한 건설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2인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2.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3.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4.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5. 환경부차관
6. 국토해양부 차관 중 국토해양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1명

③ 법 제27조제4항제1호에 의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의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제1호에 의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즉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5조(건설위원회의 운영) ① 건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건설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의하거나 자문할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설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건설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건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상북도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⑧ 도청이전 신도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6조(자문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내에 도청이전 관계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기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에 따라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내용, 대상, 규모, 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한다.

제28조(자금지원 등) 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은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9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청이전신도시건설에 관련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0조(관리와 운용)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31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상북도 등의 청사, 부대시설 및 그 부지(청사의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는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과 당해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관련 국고 보조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입금 및 예수금
5. 차입금
6. 기부금
7.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이전신도시건설 및 도청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모두
2. 차입금과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제33조(지방채 발행) 신도청소재도시 건설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4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할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임·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건설위원회 위원과 도청이전추진부서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부위원과 직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민간위원인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 하도록 하고, 비밀누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수당) 건설위원회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심의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0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심의를당 지급 기준표 (제39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심의를당	회의1시간 내는 100,000원, 매1시간 초과 시마다 30,000원을 지급하되, 1회 3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1. 구역 명							
2. 위치 및 면적							
3. 인구 및 주택현황							
인 구	천명	가 구	천호	부 족 주택수	천호	부족률	%
4. 공장현황							
공장용지수요		부족공장용지		부 족 률	%		
5. 토지이용현황(㎡)							
도시지역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기타
합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도시지역 밖	합계	계획관리지역	생산·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합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6. 공법상 제한 현황							
제한내용	위 치					면적(㎡)	
군사시설보호							
고도제한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							
기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 청 내 용				
신 청 지 역	지 구 명		사업시행면적	m ²
	위 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대행 계 획	사 업 목 적			
	대 행 사 유			
	사업개요 및 종류			
	사업시행기간		시 행 방 법	
	자금계획(천원)	총액 :	국내자본 :	외국자본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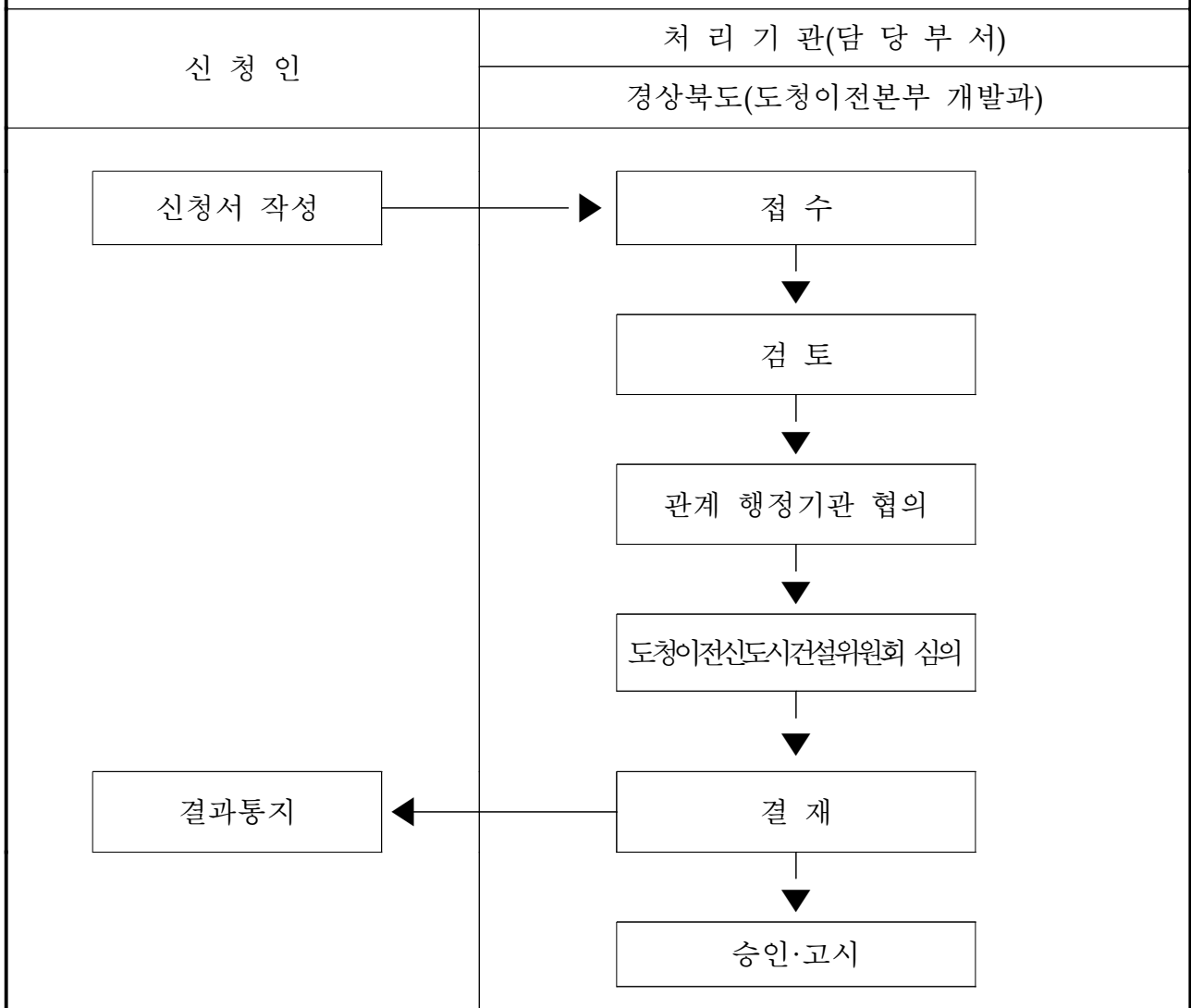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방법		사업기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2.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투자계획 4.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5. 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 포함) 7.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8.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9. 경관계획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뒤 쪽)

10. 도시정보화계획
11. 문화재보호계획
1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13. 도시방재계획
14.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5.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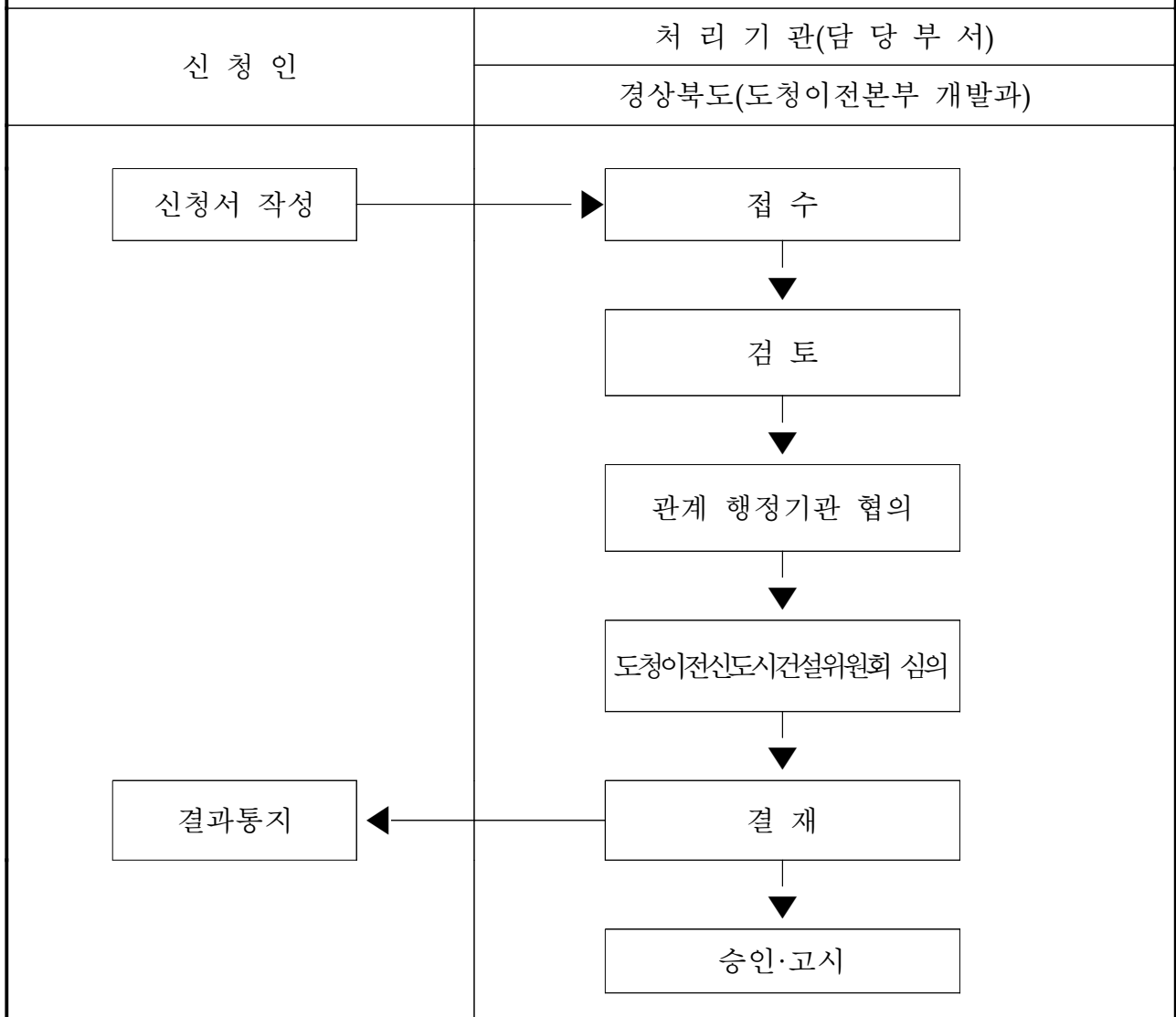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방법			사업기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 계획서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뒤 쪽)

7.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검 사 공 무 원 증 표

제 호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검 사 대 상 :
유 효 기 간 :

사 진
3 cm × 4 cm

위 사람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관인)

70mm×100mm(보존용지(1종) 120g/ m²)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도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란 도지사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있어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감의 시·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협의·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참여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 참여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재대, 식비, 강사료 등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장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

제8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도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 제18조(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9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정·운영절차 등) ①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② 도지사가 진흥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필요시 도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는 영 제22조 관련 별표2의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기관 및 배치 기준에 따라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에는 제19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7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안용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등 독도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안용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용복 장군 등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2.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연구사업
3. 청소년 바다교실 및 청소년 독도탐방 지원사업
4. 동해 해양생태 연구지원 및 독도주민 지원사업
5. 수탁사업의 연구
6.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7. 그밖에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사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익금

제8조(출연금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① 재단에 연구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 출연자가 독도와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제공) 재단은 경상북도와 시·군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를 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조(설치) 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등의 개발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

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센터장 등의 직무) ①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직원은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단)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에 참여한 자는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경상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산업단

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총수는 해당 분야별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수로 산정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1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5명
3.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2명

제10조(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에서 해촉된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부의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부의안전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

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 안”을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3조 중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문화재·에너지·소방·교통·예술·환경 및 경관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 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제1항 중 “연임”을 “3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도 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2호 중 “구조 안전, 피난 및 소방”을 “건축 전반”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4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파라펫 등의 변경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제2항 중 “5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76조의2”를 “법 제8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76조의7제3항”을 “법 제102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택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건축문화상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경상북도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u>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경상북도 행정구역안</u>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 <u>경상북도 행정구역안</u> -----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제 4조 및 영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 ----- <u>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 ----- <u>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른 건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등) ① <u>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4조(구성 등) ① <u>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u>	청위원회의 위원수 규정
②위원은 <u>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	② <u>위원은 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문화재·에너지·소방·교통·예술·환경 및 경관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청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u>	② <u>위원은 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문화재·에너지·소방·교통·예술·환경 및 경관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청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u>	건축위원회의 위촉·임명권자 규정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u>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u>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 인대상건축물(주택건설 촉진법 50조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 45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3. (생략) 4.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전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제5조(임기) ① ----- ----- <u>3회에 한하여 연임</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① <u>도 위원회</u>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 ----- <u>건축 전반</u>----- -----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중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 아야하는 공동주택의 건 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1조제2항----- ----- ----- 3. (현행과 같음) 4.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도위원회와 청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	---	------------------------------------

2. <u>법 제9조</u>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신설> <신설> 제7조(소위원회) ① (생략) ② 소위원회는 <u>5인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략) 제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u>법 제76조의2</u>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제10조(비용부담) ① <u>법 제76조의 7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② (생략)	2. <u>법 제14조</u>----- ----- 3. <u>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파라펫 등의 변경</u> ④ <u>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당해 시·군의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제7조 (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10인 이내</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u>법 제88조</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비용부담) ① <u>법 제102조 제3항</u>----- -----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청위원회의 심의대상 규정
--	---	----------------------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주택업무담당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업무담당계장</u>이 된다.(개정'03.1.6) ② (생략) <신설> <u>제18조(생략)</u>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 ----- ----- <u>업무담당과장</u> ----- <u>업무담당사무관</u> ----- ② (현행과 같음) <u>제18조(건축문화상 등) ①</u> 도지사는 <u>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u> <u>②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 <u>제19조</u> (현행과 같음)	
--	--	--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질적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 제3항 전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의 옥외광고의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 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디자인·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광고물업무 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전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구술·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법 시행규칙 별표 10 IV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명 :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13 (생 략)	1~13 (현행과 같음)
14.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산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 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 니할 것.	14. 이동탱크로부터----- ----- ----- ----- -----주유하지 아니 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법 시행 규칙 별표 10 IV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 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 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 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19 (생 략)	15~1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2 (생략)

③~⑤ (생략)

제8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2 제7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함은 “영 별표2 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

-----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 저장시설에 한함)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8조 <삭제>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①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이하 “사회적 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사회적 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②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적 기술·지식 제공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의 제품 ·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친절 · 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 공정하고 신속 · 정확하게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	<u>제5조(친절 · 공정) ①</u> <u>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하게 모든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 <u>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 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3조로 하고, 제3장제7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문화회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255번지에 둔다.

제29조(관장)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학생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예·체능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 개최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의 문화·평생교육 활동 지원
5. 기타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별표 2 중 경상북도립 금릉공공도서관란 을 삭제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및 제30조제3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중 “통할”을 각각 “총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절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제22조(설치) ① ~ ② (생략) 제23조(원장) (생략) 제24조(업무) 1. ~ 4. (생략) <u>5. 과학실험기구 수리에 관한 사항</u> 6. ~ 11. (생략) <u><신 설></u>	제5절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제22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원장)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 1. ~ 4. (현행과 같음) <u>5. 삭제</u> 6. ~ 11. (현행과 같음) <u>제7절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u> <u>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u> <u>② 학생문화회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255번지에 둔다.</u> <u>제29조(관장)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현 행	개 정 안
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u>제28조</u>(설치) (생략) <u>제29조</u>(공공도서관) (생략) <u>제30조</u>(야영장) (생략)	<u>제30조(업무)</u> 학생문화회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예·체능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3. 학생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 개최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의 문화·평생교육 활동 지원 5. 기타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u>제31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 <u>제32조</u> (현행 제29조와 같음) <u>제33조</u> (현행 제30조와 같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장”을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부교육감”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5.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 여부

제23조제2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호”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 분의 7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자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60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50

제34조제3항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을 “1989년 1월24일”로,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포함)”를 “토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감과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가”를 “교육감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1 (생략) 2. ----- <u>하급</u> <u>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u> 을 말한다. 3~5. (생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u>하급</u> <u>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u> 을 말한다. 3~5.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① (생략) ② ----- ----- <u>교육장</u> 에게 위임한다. ③~④ (생략)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① (현행과 같음) ② ----- ----- <u>지역</u> <u>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u> <u>다.)</u> 에게 위임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 ① (생략) 1. (생략) 2. 위원장은 <u>부교육감</u> 이 되고 부위원장은 <u>기획관리국장</u> 이 되며, -----. 3. (생략) ②~④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원장은 <u>기획관리국장</u> 이 되고, 부위 원장은 <u>재무관리과장</u> 이 되며, -----. 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 의 업무) ① (생략) 1. (생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행정재산으로의 확 정 사항 3.~4. (생략) < 신 설 >	제6조(심의회 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3~4. (현행과 같음) 5. <u>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u> <u>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u> <u>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u> <u>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u> <u>자 할 경우 허가 여부</u> 6.-----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	

현행	개정안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영 제7조 제2항----- 2. 「건축법」 제49조의제1항----- ----- 3~4. (생략)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1. (생략) 2. ----- 지방산업단지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 4~6. (생략)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 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 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 부하는 경우: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 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자와 거주 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 ② (현행과 같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2. 「건축법」 제57조제1항----- ----- 3~4.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1. (현행과 같음) 2. ----- 일반산업단지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4~6.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 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 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 부하는 경우: 100 분의 7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 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자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60 3. 기타의 경우: 100분의 50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의한 대부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u>전년도 대부료+(금년도 대부료-전년도 대부료)× 감액율</u>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 1~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1~3. (생략) 4. ----- <u>1981년 4월 30일</u> 이전부터 <u>지방자치단체</u> 소유 ----- <u>토지</u>(「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 다만, ---<u>지방자치단체</u> 소유 ---- <u>지방자치단체</u> ---- 「건축법」 제49조제1항-----. 5. <u>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u> 이외의 ----- <u>지방자치단체가</u>---다만, ----- <u>지방자치단체</u>-----.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제3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u>1989년 1월 24일</u> 이전부터 <u>교육감</u> 소유 -----<u>토지</u>의 ----. 다만, --- <u>교육감</u> 소유---- <u>교육감</u> ---- 「건축법」 제57조제1항-----. 5. <u>교육감과 교육감</u> 이외의----- <u>교육감이</u> -----다만,----- <u>교육감</u>-----.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 (이하”교육감“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원의 조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3호의 지원대상 자격은 경상북도내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

④ 제4조제5호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내 농산어촌 지역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하고, “매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하고,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회계년도”를 각각 “회계연도”로 한다.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5조 중 “교육규칙”을 각각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u> 경상북도교육위원회 --- <u>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u> -----.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u> <u>의 규정에 의거</u> 경상북도교육위원회 ----- <u>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u> -----.
제2조(기금의 설치) <u>교육감</u> 은 이 조례의 ----- <신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u>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u> <u>육감”으로 한다)</u> 은 이 조례의 ----- ②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u> <u>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u> 기금의 존속기 <u>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u> <u>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제3조(기금의 재원) ① -----. 1. <u>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2~4 생략 ② ----- <u>회계년도</u> -----. <신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 1. <u>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u> 2~4. 현행과 같음 ② ----- <u>회계연도</u> -----. ③ <u>제1항에 의한 재원의 조성·운영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제4조(기금의 용도) -----. 1~4 생략 <신설>	제4조(기금의 용도) -----. 1~4. 현행과 같음 5. <u>교직원 연립사택 확충</u>
제5조(지원대상) ① 생략 <신설> ② ----- <u>당해년도</u> -----. <신설>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조제3호의 지원대상 자격은 경상북도</u> <u>내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u> ③ ----- <u>당해연도</u> -----. ④ <u>제4조제5호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내 농산어</u> <u>촌 지역으로 한다.</u>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내용) ① ----- <u>회계년도</u> -----. ②~④ 생략 ⑤ ----- <u>교육규칙</u>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내용) ① ----- <u>회계연도</u>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u>시행규칙</u>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교육위원회 제출) 교육감 은 <u>지방재정법 제110조</u> 에 따라 제8조의 기금 운용계획서를 <u>매 회계년도</u> 마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교육위원회 제출) 교육감은 「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 제8조에 따라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서를 <u>회계연도</u> 마다 -----.

현행	개정안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 <u>교육규칙</u> -----. ③ 생략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행규칙</u>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생략 ② ----- <u>교육규칙</u> -----.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행규칙</u> -----.
제12조(기금결산보고서) ① ----- <u>지방재정법 제110조</u> -----. ② ----- <u>교육규칙</u> -----.	제12조(기금결산보고서) ① ----- 「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 제8조-----. ② ----- <u>시행규칙</u> -----.
제13조(기금의 일시차입) ① 생략 ② ----- <u>회계연도</u> -----.	제13조(기금의 일시차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u>회계연도</u> -----.
제15조(시행규칙) ----- <u>교육규칙</u> -----.	제15조(시행규칙) ----- <u>시행규칙</u> -----.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를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가. 본청, 본청 직속기관 및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 나.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u>동법</u> 시행령---- <u>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u> ---	제1조(목적) -- <u>같은 법</u> 시행령---- <u>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u> --
제4조(기능) -----	제4조(기능) -----
1. <u>본청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u>	1.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
가. <u>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	가. <u>본청, 본청 직속기관 및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u>
나. <u>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	나. <u>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u>
다. <u>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u>	
<신설>	2. <u>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
<신설>	3. <u>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u>
2. <u>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	4. <u>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5. <u>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동의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징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징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9. 1. 30.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내에 상징건축물을 건립한 후 기부 채납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문화엑스포 행사 및 상시개장에 활용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무상사용 허가 내용
 - 재산목록 :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별첨 참조)
 - 사용용도 : 문화엑스포 행사 및 상시개장
 - 신청자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장 김관용
 - 허가기간 : 2008. 11. 4 ~ 2010. 6. 22 (1년 7개월)
 - ※ 엑스포 부지 무상사용 허가기한 : 2010. 6. 22

○ 무상사용 허가의 필요성

-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이후 5회의 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와 문화산업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엑스포문화센터」와 「경주타워」가 건립되어 명실상부한 종합문화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됨에 따라,
- 향후 문화엑스포 행사 개최 및 상시 개장을 위해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필요가 있으며,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현 재정여건상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보조가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자립경영이 확보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參考資料>

무상사용 허가대상 공유재산 조서

구분	소재지	건축물명칭	건물내역	면적(m ²)	비고
건물	합 계			14,028.0	
	경주시 천군동 121, 130, 698, 1595, 1596-1	경주타워	소계	4,016.9	道지분 1/2 경주시 1/2
			1층 로비	1,167.2	
			2층 관망탑	56.0	
			3층 관망탑	56.0	
			4층 관망탑	56.0	
			5층 관망탑	56.0	
			6층 관망탑	56.0	
			7층 관망탑	56.0	
			8층 관망탑	56.0	
			9층 관망탑	56.0	
			10층 관망탑	56.0	
			11층 관망탑	56.0	
			12층 관망탑	56.0	
			13층 관망탑	56.0	
			14층 관망탑	56.0	
			15층 관망탑	56.0	
			16층 전망대	1,171.3	
			17층 전망대	894.4	
		엑스포 문화센터	소계	10,011.1	道지분 1/2 경주시 1/2
			지하1층 기계실, 연습실	3,772.7	
			1층 공연장 전시실	4,723.3	
			2층 카페테리아	1,374.2	
			3층 계산실, 복도	140.9	

<參考資料>

상징건축물 건립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경주시 천군동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지내
- 사업기간 : 2004 ~ 2007(4년간)
 - ※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지연으로 사업기간 1년 연장
- 사업규모 : 2동 14,028㎡
 - 엑스포문화센터 - 10,011㎡(지하1층, 지상3층)
 - 경주타워 - 4,017㎡(높이 82m)
- 사 업 비 : 440억원(국비 220, 지방비 220)
- 시 공 사 : 현대건설 외 4개사(건축), 동흥전력(전기),
대신네트웍스(통신)
- 감 리 :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 주요 추진경과

- 2003. 2. : 사업 타당성 조사(영남지역발전연구소)
- 2004.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4. 11. 23 : 상징건축물 건립부지 사용허가(道, 경주시⇒재단)
 - ※ 허가조건 : 건축물 완공 후 기부채납
- 2004. 12. 27 : 건축허가(경주시)
- 2005. 6. 30 : 착 공
- 2007. 8. 14 : 준 공

- 2007. 9. 28 :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신청(재단⇒道,경주시)
- 2007. 10. 10 : 경상북도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07. 12. 21 : 도의회 의결(기부채납 승인)
- 2008. 10. 13 : 경주시 의회 의결(기부채납 승인)
- 2008. 11. 4 : 소유권 이전 등기(道 1/2, 경주시 1/2)

□ 향후 활용방안

- 엑스포문화센터
 - 지역 문화예술교육, 문화체험 활동의 장으로 활성화
 - 상시공연 및 전시 유치
 -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을 통한 수익사업 도모
- 경주타워
 - 야간 레이저쇼의 배경 및 관람객 유인을 위한 전망대로 활용
 - 전망1층 대관을 통한 수익창출
 - 전망층 편의시설(스카이라운지) 운영 검토(장기과제)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2009. 3 인쇄 / 2009. 3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